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9
----------	-----

2023. 4. 2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7. 김진경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4. 2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김진경 의원)

-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등 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강남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안 제6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비밀 준수 의무(안 제9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사항 검토

- 가. 총칙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의 빠른 확산,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의 반영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하며, 반영구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또한 정의 규정에서(안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제14조부터 제14조의3¹⁾까지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²⁾ 등을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여, 동 조례에서 예방 및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나.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안 제4조 및 제5조)

-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안 제5조)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보호·지원을 위하여 각 호로 개별 사업들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안 같은조제2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제4호)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의 삭제 요청·삭제 완료 확인·모니터링 등 유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내 지원 조치 전반을 의미하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³⁾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1항제3호4)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어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지정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삭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경찰서 등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함

라.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 조례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나 개인의 은밀한 영상 및 사진 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	-----

발의연월일: 2023. 4. 7.

발의자: 김진경·이성수·이도희·이향숙·
전인수·이동호·김영권·노애자·
김광심·김민경·안지연·
오은누리·복진경 의원(이상13인)

1. 제안이유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등 범죄의 수법과 유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강남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6.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